**‘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

국가세무총국, 2020년 3월

‘코로나19’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부서는 신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 지시 사항과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고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계획을 철저히 집행하며 조세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살려 전력을 다해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기업의 영업•조업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당중앙•국무원은 3단계에 나누어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지원을 위한 조세 정책을 출범하였다. 첫 번째 단계의 정책은 방역 업무를 둘러싼 정책으로 의료구조 업무와 보장물품의 생산•운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단계의 정책은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둘러싼 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경감시키고 기업에게 영업•조업 재개에 대한 확신감을 심어주고자 기업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기본의료보험료를 감면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정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돕고자 증치세소규모납세자, 사업주 형태로 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부동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 대한 조세 혜택을 출범하였다.

현단계 세무부서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의 실행을 보장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 조세혜택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며 납세자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며 안전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기능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며 납세자가 제반 조세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총국은 새로 출범된 ‘코로나19’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지원 관련 조세혜택 정책을 정리하고 동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호•치료 지원**
2.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3.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4. **물품공급 지원**
5.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6.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7.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8.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一次性) 공제 허용
9.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10. **공익성 기부 권장**
11.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12.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직접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13. 무상으로 기부하는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면제
14.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 확대
15. **영업•조업 재개 지원**
16.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
17.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한시적 감면
18. 기업의 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한시적 감면
19. 사업주 형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종업원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보험료 한시적 감면
20.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한시적 감면
21. 각 지방이 도농토지사용세 감면 등 방식으로 임대인의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것을 격려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 모음**

1. **방호•치료 지원**
2.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호•치료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업무 수행인력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호•치료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업무 수행인력이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는 각급 정부가 규정한 수당과 장려금 기준이 포함된다.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통제 업무 수행인력에게 지급되는 임시 업무수당과 장려금도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방역•통제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0호)

1.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

업체•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용 약품•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물품(현금 제외)을 지급받는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품•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물품(현금 제외)은 임금•급여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방역•통제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0호)

1. **물품공급 지원**
2.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는 월 단위로 관할세무기관에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이라 함은 2019년 12월 말 대비 새로 증가한 기말 이월공제세액을 지칭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생산업체 명단은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생산업체로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정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한 후 관할세무기관에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이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가 확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리스트**

|  |  |  |
| --- | --- | --- |
| 순서 | 분류 | 물품 리스트 |
| 가 | 의료응급물품 | 1.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사용되는 방호복, 격리복, 격리용 안면보호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및 방호 기능을 갖춘 민용 마스크, 의료용 보호안경, ‘코로나19’ 진단키트, 음압 구급차, 소독기, 소독용품, 적외선 온도측정기, 지능형 모니터링•테스팅 시스템, 관련 의료기기, 알콜 및 약품 등 중요 의료물품. |
| 1. 상기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중요 원부재료, 중요 설비와 관련 부대시설 |
| 1.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설비 |
| 나 | 생활물품 | 1. 텐트, 솜이불, 방한복, 접침상 등 구호물품 |
| 1.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시장공급을 중점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식량, 식용유, 소금, 사탕, 채소, 육류•계랸•우유, 수산물 등 ‘채소바구니’ 제품과 즉석식품•냉동식품 등 중요 생필품 |
| 1. 채소 종묘, 새끼 가축•가금 및 종축•종금, 수산물 종묘, 사료, 화학비료, 종자, 농약 능 농업용 물품 |

**공업정보화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의료응급) 리스트**

|  |  |  |  |
| --- | --- | --- | --- |
| 순서 | 1급분류 | 2급분류 | 물품 리스트 |
| 가 | 1. 약품 | (1) 일반 치료 및 중증•위중 환자 치료용 약품 | interferon-α, Lopinavir and Ritonavir Tablets (케이스), 항균약물, HDMP, Glucocorticoid 등 위생건강•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절차에 따라 치료효과를 확인한 약품과 백신(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방안을 기준으로 함) |
| 나 | (2) 한방약품 | 곽향정기교낭(藿香正气胶囊)(완•수•구복액),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 연화청온교낭(连花清瘟胶囊)(과립), 소풍해독교낭(疏风解毒胶囊)(과립), 방풍통성완(防风通圣丸)(과립), 희염평주사제(喜炎平注射剂), 혈피정주사제(血必净注射剂), 삼부주사액(参附注射液), 생맥주사액(生脉注射液), 소합향완(苏合香丸), 안궁우황완(安宫牛黄丸) 등 한약제제(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방안을 기준으로 함),  창출(苍术), 진피(陈皮), 후박(厚朴), 곽향(藿香), 초과(草果), 생마황(生麻黄), 강활(羌活), 생강(生姜), 빈랑(槟郎), 행인(杏仁), 생석고(生石膏), 과루(瓜蒌), 생대황(生大黄), 정력자(葶苈子), 도인(桃仁), 인삼(人参), 흑순편(黑顺片), 산수유(山茱萸), 법반하(法半夏), 당삼(党参), 자황기(炙黄芪), 복령(茯苓), 사인(砂仁) 등 한약차(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방안을 기준으로 함) |
| 다 | 2. 시약 | (1) 검사•측정용품 |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
| 라 | 3. 소독용품 및 그 주요 원재료, 포장재료 | (1) 소독용품 | 의료용 알콜, 84소독제, 과산화아세트산 소독제, 과산화수소(3%) 소독제, 염소함유 발포정, 손 소독제, 신속건조형 손 소독제 등 |
| 마 | (2) 소독용품의 주요 원료 | 차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수소수, 알콜도수 96%의 식품용 주정(酒精) 등 |
| 바 | (3) 소독용품 포장재료 | 펌프, 플라스틱 병(통), 유리 병(통), 종이상자, 라벨 등 |
| 사 | 4. 방호용품 및 그 주요 원재료, 생산설비 | (1) 방호용품 | 의료용 방호 마스크, 의료용 외과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음압 방호두건, 의료용 신발커버, 의료용 전면형 호흡방호기, 의료격리용 안경, 의료격리용 안면보호마스크, 일회용 라텍스 장갑, 수술복, 격리복, 일회용 작업 모자, 일회용 의료용 모자(환자용) 등 |
| 아 | (2) 방호용품의 주요 원료 | 코팅 스펀본드 부직포, 통기성 필름, 멜트블로운 부직포, 격리용 안경•안면마스크용 PET/PC 김서림 방지 권재•편재, 실 스트립, 지퍼, 정전기 방지제 및 의료용 방호복•마스크 등의 생산에 필요한 기타 중요 원재료 |
| 자 | (3) 방호용품 생산설비 | 방호복 압출기, 마스크 제조기계 |
| 차 | 5. 전용 차량, 장비, 측정기기, 및 핵심 소자•부품 | 1. 차량장비 | 음압 구급차 및 기타 유형의 구급차, 전용 작업차량; 음압 격리실, 신속 개설 읍압 격리병실, 음압 격리텐트 시스템; 차량탑재형 음압 시스템, 양압 지능형 방호 시스템; CT, 휴대용 DR, 심전도 측정기, 칼라 초음파 검사기 등, 전자후두경•굴곡내시경 등; 호흡기, 모니터, 세동제거기, High flow breathing humidification therapy instrument, 의료용 전동병상; 혈액분석기, PCR기기, ACT 검사기 등; 실린지 펌프, 인퓨전 펌프, ECMO, CRRT 등 |
| 카 | (2) 소독장비 | 배낭식 충전형 초저용량 분무기계, 배낭식 충전형 초저용량 분무기, 과산화수소 소독기, 폴라즈마 공기 소독기, 환자 사망/퇴원 후 사용하는 공기 소독기 등 |
| 타 | (3) 전자측정기•계량기 | 전자동 적외선 체온측정기, 도어형 체온측정기, 휴대용 적외선 체온측정기 등 적외선 체온측정 설비와 기타 지능형 감시•검측 시스템 |
| 파 | (4) 핵심 소자•부품 | 흑체, 온도 센서, 센서 칩, 디스플레이, RC 소자, 탐측기, 전기적 접속 소자, 리튬 배터리, 인쇄회로기판 등 |
| 하 | 6. 상기 의료용품 생산에 필요한 중요 설비 | |  |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도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적용 대상]**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대중교통운송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재세[2016]36호로 발부)에 따라 집행한다.

|  |  |
| --- | --- |
|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 여객선, 시내버스, 지하철, 시내 경전철, 택시, 시외버스, 셔틀버스. 그중에서 셔틀버스라 함은 고정된 시간에 고정 노선에 따라 운영하는 고정 정차점에 정차하는 육로 여객수송 서비스를 지칭한다. |
| 생활 서비스 | 생활 서비스라 함은 도농 주민의 일상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 활동을 지칭하며 문화•스포츠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 관광•오락 서비스, 요식•숙박 서비스, 일상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를 포함한다.  ■ 문화•체육 서비스는 문화 서비스와 스포츠 서비스를 포함한다. (1) 문화 서비스라 함은 대중의 문화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를 지칭하며 문화예술창작, 문화예술공연, 문화시합, 도서관의 도서•자료 대여, 기록관(档案馆)의 기록(档案) 관리,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보호, 종교 행사•과학기술 행사•문화 행사 주최, 관광시설 제공을 포함한다. (2) 스포츠 서비스라 함은 스포츠 경기, 스포츠 공연,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스포츠 훈련, 스포츠 지도, 스포츠 관리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교육•의료 서비스는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1) 교육 서비스라 함은 학력교육 서비스, 비(非)학력교육 서비스, 교육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학력교육 서비스라 함은 교육행정관리부서가 확정하거나 인정하는 학생 모집 및 교학 계획에 근거하여 교학을 실시하고 상응하는 학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하며 초등교육, 초급중등교육, 고급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을 포함한다. 비(非)학력교육 서비스라 함은 취학전 교육 및 각 유형의 교육훈련, 강연, 강좌, 보고회 등을 포함한다. 교육보조 서비스라 함은 교육 테스트•평가, 시험, 학생 모집 등 서비스를 포함한다. (2) 의료 서비스라 함은 의학검사, 진단, 치료, 재활, 예방, 보건, 조산(助産), 계획생육, 방역 서비스 등 방면의 서비스 및 상기 서비스와 관련된 약품, 의료요 재료•기구, 구급차, 병실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지칭한다.  ■ 관광•오락 서비스는 관광 서비스와 오락 서비스를 포함한다. (1) 관광 서비스라 함은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교통, 유람, 숙박, 식사, 쇼핑, 문화•오락, 비지니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2) 오락 서비스라 함은 오락 활동을 위하여 시설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업무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노래방, 댄스클럽,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당구, 골프, 볼링, 게임(사격, 사냥, 승마, 게임기, 번지 점프, 카트, 열기구, 패러모터, 양궁, 다트 포함)을 포함한다.  ■ 요식•숙박 서비스는 요식 서비스와 숙박 서비스를 포함한다. (1) 요식 서비스라 함은 음식물 및 접객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음식물 소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2) 숙박 서비스라 함은 숙박시설 및 부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칭하며 호텔(賓館), 여관, 호스텔(旅社), 리조트(渡假村) 및 기타 경영성 숙박시설이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를 지칭한다.  ■ 일상 주민 서비스라 함은 주민 개인과 그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도시환경•시정(市政) 관리, 가사 도우미, 웨딩, 양로(養老), 장례, 돌봄•간호, 구조•구제, 미용•미발, 마사지, 사우나, 산소 카페, 발 마사지, 목욕, 세탁•염색, 촬영•인화 등 서비스를 포함한다.  ■ 기타 생활 서비스라 함은 문화•스포츠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 관광•오락 서비스, 요식•숙박 서비스, 일상 주민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생활 서비스를 지칭한다. |
|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 |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라 함은 발송인의 위탁을 받아 약속한 기한 내에 서신•소포의 수거•분류•배달 서비스를 완성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택배 수거 서비스라 함은 발송인으로부터 서신•소포를 수취하여 서비스제공자의 동일 지역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운송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택배 분류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그의 물류센터에서 서신•소포를 분류하고 분배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택배 배달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서신•소포를 그의 물류센터로부터 동일 지역에 위치한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생활 서비스,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용역•무형자산•부동산 판매에 관한 주석>(재세[2016]36호로 발부)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도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재정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전면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3.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4.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一次性) 공제 허용**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관련 설비에 대해 당기 원가에 일괄적으로 산입하여 기업소득세 세전에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구체적인 명단은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혜택 정책 관리 등은 <국가세무총국의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2018년 제46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기업은 납세신고 시 관련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고정자산 일괄 공제’ 란에 작성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대상]**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면세수입물품은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르거나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를 참조하여 선 등록통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이행할 수 있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6호)

1. **공익성 기부 격려**
2.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공제를 허용한다.

국가기관, 공익성 사회조직이 접수한 기부금품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공익성 사회조직’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사회조직을 칭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자가판단, 혜택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비치’의 방식을 취하며 기부액수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해당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은 <재정부•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9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직접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공제를 허용한다.

기부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발행한 기부접수증에 의하여 세전공제 수속을 이행한다.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접수한 기부물품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자가판단, 혜택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비치’의 방식을 취하며 기부액수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해당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은 <재정부•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9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수속 이행 시와 <개인소득세 공익자선사업 기부액수 공제명세표> 작성 시 비고란에 ‘직접 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접수증은 세전공제의 근거가 되며 스스로 비치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무상으로 기부하는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업체•기관 및 자영업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업체•기관 및 자영업자가 자가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화물을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치거나 직접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를 면제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소비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소비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비세 납세신고 시 소비세납세신고표 및 <당기감(면)세액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소비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소비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소비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 확대**

**[적용 대상]**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자선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에 규정한 면세수입 범위를 적당히 확대하여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입 품목에 진단키트, 소독물품, 방호용품, 구급차, 방역차, 소독차, 응급지휘차를 추가한다.
2. 면세 범위에 국내 유관 정부부서, 기업•사업기관, 사회단체, 개인 및 중국 방문 외국인 또는 재중 외국인이 해외 또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수입하여 직접 기부하는 경우와 국내 가공무역기업이 기부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기부물품은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기 제(1)호 또는 <자선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기부대상자에 성(省)급 인민정부 또는 그가 지정한 업체•기관을 추가한다. 성(省)급 인민정부는 그가 지정한 업체•기관 명단을 공문서로 소재지 직속세관 및 성(省)급 세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6호를 적용받는 면세 수입물품에 대해응당히 면제하여야 하는 세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 환급처리한다. 그중에서 이미 수입세금을 징수하였으나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세무기관이 발행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용 수입물품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소비세의 환급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소비세의 환급처리만 신청한다. 유관 수입업체•기관은 2020년 9월 30일 전에 세관에 세금 환급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면세 수입물품은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르거나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를 참조하여 선 등록통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이행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자선기부물품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제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02호)
2.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6호)
3. **영업•조업 재개 지원**
4.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

**[적용 대상]**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이라 함은 교통운송, 외식, 숙박, 관광(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 관리 2개 유형 포함) 4대 업종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 업종 분류>에 따라 집행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주영업활동 매출액이 총 매출액(비과세소득 및 투자수익 제외)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이 규정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정책을 적용받을 경우 2020연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3.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한시적 감면**

**[적용 대상]**

증치세소규모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베이(湖北)성 내 증치세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 3% 징수율 적용대상 과세 매출액의 증치세를 면제하고 3% 예비징수율 적용대상 증치세 예납 항목의 증치세 예납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베이(湖北)성을 제외한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3% 징수율 적용대상 과세 매출액의 증치세 세율을 1%로 인하하고 [매출액 = 세포함 매출액 / (1+1%)] 이 공식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한다. 3% 예비징수율 적용대상 증치세 예납 항목은 1%의 예비징수율로 증치세를 예납한다.

증치세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 납세신고 시 상기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대상 매출액 등 사항을 <증치세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면세 항목 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1%의 세율로 증치세를 과세하는 매출액은 <증치세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의 ‘증치세 과세대상 세금제외 매출액(징수율 3%)’ 란에 작성하여야 하며 증치세 감면금액은 매출액의 2%로 산정하여 <증치세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의 ‘당기 증치세 감면액’ 란과 <증치감면신고명세표>의 세금 감면 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증치세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 별첨자료>의 제8란 ‘세금제외 매출액’ 계산공식을 [제8란 = 제7란 ÷ (1+징수율)]로 조정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자영업자 영업•조업 재개 지원을 위한 증치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3호)
2. <국가세무총국의 자영업자 영업•조업 재개 지원 등 조세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5호)
3. **기업의 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한시적 감면**

**[적용 대상]**

공기관•사업기관을 제외한 기본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이하 ‘3종 사회보험’으로 약칭) 가입업체

**[혜택 내용]**

2020년 2월부터, 후베이(湖北)성은 각 유형 사회보험가입업체(공기관•사업기관 제외)의 3종 사회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20년 2월부터, 각 성•자치구•직할시(후베이(湖北)성 제외)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이하 ‘성(省)’으로 통칭)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상황과 펀드 부담능력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3종 사회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대기업 등 기타 사회보험가입업체(공기관•사업기관 제외)의 경우 3종 사회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렴을 겪고 있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유예기간에 체납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성(省)은 공업정보화부•통계국•발전개혁위•재정부의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공신부련기업[2011]300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성(省)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감면대상 기업을 확정하며 기업의 사무적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부서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각 성(省) 세무국은 이미 징수가 이뤄진 2020년 2월분 사회보험료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여 환급(상계) 처리가 필요한 기업 및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확정한 처리원칙에 따라 절차를 최적화하고 효율을 개선하여 직권에 따라 사회보험료 환급 업무를 지체없이 처리함으로써 기업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확실하게 완화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가 이뤄진 2월분 사회보험료를 향후 발생될 사회보험료와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회보험가입업체에 대하여 상계처리 절차와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회보험료 상계처리 업무를 질서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사호보험료 납부유예 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현지의 실제사황과 결부시켜 업무 절차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납부유예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사회보험료 납부유예기간에 체납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등 정책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실행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납부업체가 해당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세무총국의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20]11호)
2.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정책 관철•실행에 관한 통지>(세총함[2020]33호)
3. **사업주 형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종업원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한시적 감면**

**[적용 대상]**

사업주 형태로 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혜택 내용]**

2020년 2월부터 사업주 형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3종 사회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면제하며 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정책 근거]**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세무총국의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20]11호)
2.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한시적 감면**

**[적용 대상]**

기본의료보험 가입업체

**[혜택 내용]**

2020년 2월부터,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이하 ‘성(省)’으로 통칭)은 통합(統籌)지역을 지도하여 펀드 운영상황과 실제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펀드의 중장기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종업원의료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50%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통합(統籌)펀드 누계 잔고의 지급가능 월 수가 6개월 이상인 통합(統籌)지역은 종업원의료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감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급가능 월 수가 6개월 미만이나 종업원의료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감면 필요성이 확실한 통합(統籌)지역은 각 성(省)이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추진한다. 납부유예 정책은 계속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되 납부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납부유예기간에 체납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성(省) 세무국은 이미 징수가 이뤄진 2020년 2월분 사회보험료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여 환급(상계) 처리가 필요한 기업 및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세무총국•국가의료보장국이 공동으로 확정한 처리원칙에 따라 절차를 최적화하고 효율을 개선하여 직권에 따라 사회보험료 환급 업무를 지체없이 처리함으로써 기업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확실하게 완화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가 이뤄진 2월분 사회보험료를 향후 발생될 사회보험료와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회보험가입업체에 대하여 상계처리 절차와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회보험료 상계처리 업무를 질서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사호보험료 납부유예 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현지의 실제사황과 결부시켜 업무 절차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납부유예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사회보험료 납부유예기간에 체납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등 정책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실행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납부업체가 해당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근거]**

1. <국가의료보장국•재정부•세무총국의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관한 지도의견>(의보발[2020]6호)
2.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정책 관철•실행에 관한 통지>(세총함[2020]33호)
3. **각 지방이 도농토지사용세 감면 등 방식으로 임대인의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것을 격려**

상세한 내용은 지방정부의 공문 참조.